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0호서식] <개정 2018. 9. 28.>

##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

보나	는 사람	<b>.</b> ∤				Д.О.	우체국
							요금후납
					받는 서	나람	
<u>즉결심판출석통지서</u>						<u> </u>	<b>벜칙금등 영수증</b> (납부자용)
통지서	번호 :						
교통범칙	칙금 미납자		생년월일			통지서번호	
즉결심	판예정일		즉결심판소			회 계	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
		l정사항으로, 출석 h여 기일과 장소를			시 전화・우편 또	세입징수관서	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
범칙금등	등 납부기한		범칙금등		원	계좌번호	
	위반일시					납부금액	
위 반	위반장소					납부기한	
사 항	위반내용	부	칙금통고서			납 부 자	
	범 칙 금	원	번호			생년월일	
□ 귀하께서는 교통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.							
□ 귀하께서 원할 경우 「도로교통법」 제165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가지고 <u>가까</u> <u>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을</u> 납부하시면 즉							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.
결심판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				ᄄᆫᅯᆉᄓᆒᅕ		20 년 월 일	
□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·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 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리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					은행	지점(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)	
다.  □ 귀하께서 위 범칙금등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않거나. 즉결심판							시점(국고네디점 및 국고구립네디점)
을 벋	시 아니하는	는 경우에는 즉결성	심판에 의한 벌	금 또는 과료	는 물론, 「도로		
		E에 따라 <u>면허정</u> Z <u>항 및 별표 28에</u>			수납자인	취급점영수인	
	<u> </u>	점수에 산입되어 추	<u>소 행정처분</u> 을	있으니 유의하시			
☐ <u>은행</u>	수납자료의	오류로 인하여					
	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FAX (000-000-0000) 로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.						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 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.
		년	월 일	빌			
			경 찰	서장 _	TI OI		
		제 주 특 별	자치도	기사 [	된 인		

통고서번호	회 계	
계좌번호	세입징수관서	
납부금액	납부기한	
납 부 자	생년월일	

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

##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은행(우체국) (수납인) 210mm×297mm(백상지 60g/m²)